

2013년 임금동향과 2014년 전망

정성미·배기준*

I. 2013년 임금동향

1. 2013년 임금상승률 3.9%를 기록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013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11천 원으로 2012년에 비해 3.9% 상승하였다. 이는 2012년 임금상승률(5.3%)에 비해 다소 둔화된 수준(1.4%p 하락)으로 주로 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임금상승률이 크게 둔화한 이후 큰 폭의 등락을 반복하며 안정적이지 않은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2013년 임금상승률을 내역별로 살펴보면(표 1 참조), 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은 3.8%로 2012년에 비해 1.5%p 감소한 반면,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비상용직은 2012년 6.4%에서 2013년 6.5%로 예년과 비슷한 증가율을 보였다. 상용직의 임금상승률이 둔화한 데는 정액급여와 특별급여의 증가율이 2012년 수준만큼 증가하지 않은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특히 정액급여의 경우 2012년 5.5%에서 2013년 4.4%로 1.1%p 감소, 특별급여는 2012년 5.8%에서 2013년 1.8%로 4.0%p 떨어졌다. 한편 초과급여는 2012년 대비 0.7%p 올랐으나 증가수준이 매우 미미하다.

정액급여는 향후 임금수준에 누적되어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지난 5년간 경기의 흐름과 상관없이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를 보였지만, 2013년에는 추세를 뒤집고 1.1%p 감소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즉 과거에는 경기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는 특별급여와 초과급여에 의해 임금상승률 변화의 폭이 결정되었지만, 2013년에는 과거와는 다른 흐름을 보였다.

* 정성미=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smjung@kli.re.kr), 배기준=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backj@kli.re.kr).

〈표 1〉 최근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단위 : 천 원/월, %, 소비자물가지수 2010=100.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사업체 노동력 조사	전체근로자(5인 이상 사업체) (상승률)	2,569 (-)	2,636 (2.6)	2,816 (6.8)	2,844 (1.0)	2,995 (5.3)	3,111 (3.9)	
	실질임금상승률	-	-0.1	3.8	-2.9	3.1	2.6	
	상 용 직	임금총액 (상승률)	2,802 (4.4)	2,863 (2.2)	3,047 (6.4)	3,019 (-0.9)	3,178 (5.3)	3,299 (3.8)
		실질임금상승률	-0.2	-0.5	3.4	-4.7	3.0	2.5
		정액급여 (상승률)	2,057 (3.3)	2,139 (4.0)	2,234 (4.5)	2,341 (4.8)	2,470 (5.5)	2,578 (4.4)
		초과급여 (상승률)	179 (7.5)	175 (-2.2)	196 (12.2)	179 (-8.4)	181 (1.0)	184 (1.7)
		특별급여 (상승률)	566 (7.7)	550 (-2.8)	617 (12.3)	498 (-19.3)	527 (5.8)	537 (1.8)
		비상용직 임금총액 (상승률)	1,052 (-)	1,073 (1.9)	1,056 (-1.6)	1,215 (15.1)	1,293 (6.4)	1,377 (6.5)
	경제활동 인구조사 부가조사	임금총액 (상승률)	1,846 (5.8)	1,852 (0.3)	1,949 (5.2)	2,032 (4.3)	2,104 (3.5)	2,181 (3.7)
		실질임금상승률	0.1	-1.6	2.5	-0.2	1.8	2.4
가계동향 조사	전국(2인 이상, 근로자가구) (상승률)	3,287 (6.1)	3,280 (-0.2)	3,435 (4.7)	3,613 (5.2)	3,838 (6.2)	3,957 (3.1)	
	도시(2인 이상, 근로자가구) (상승률)	3,383 (7.0)	3,322 (-1.8)	3,479 (4.7)	3,670 (5.5)	3,885 (5.9)	3,993 (2.8)	
소비자물가상승률		4.7	2.8	3.0	4.0	2.2	1.2	
실질GDP상승률		2.3	0.3	6.3	3.7	2.0	2.8	
근로시간 (월)	전체근로자(5인 이상) (상승률)	176.7 (-)	176.1 (-0.3)	176.7 (0.3)	176.3 (-0.2)	174.3 (-1.1)	172.6 (-1.0)	
	상용직 (상승률)	184.8 (-1.9)	184.4 (-0.2)	184.7 (0.2)	182.1 (-1.4)	179.9 (-1.2)	178.1 (-1.0)	

- 주 : 1) 고용노동부의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는 상용근로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던 『매월노동통계조사』를 2008년도부터 전체 근로자로 확장한 것임.
 2) 2011년 이후 『사업체고용동향조사』와 『사업체임금근로시간조사』를 통합하여 『사업체노동력조사』로 변경하여 조사대상을 종사자 1인으로 확대하고, 조사주기를 분기에서 월로 변경하며, 산업분류를 개편(KSIC 8차 → KSIC 9차)하고 2008년 이후 시계열 연계자료를 재산출함.
 3) 임금자료 중 고용노동부 자료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통계청 자료는 가구조사로 임금근로자 전체가 대상임.
 4)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은 각 연도 6~8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함.
 5)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가계동향조사』, KOSIS.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그림 1] 사업체규모별 정액급여증가를 추이

(단위 : %)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이러한 변화를 사업체 규모로 나누어 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사업체를 제외한 다른 모든 규모에서 정액급여 상승률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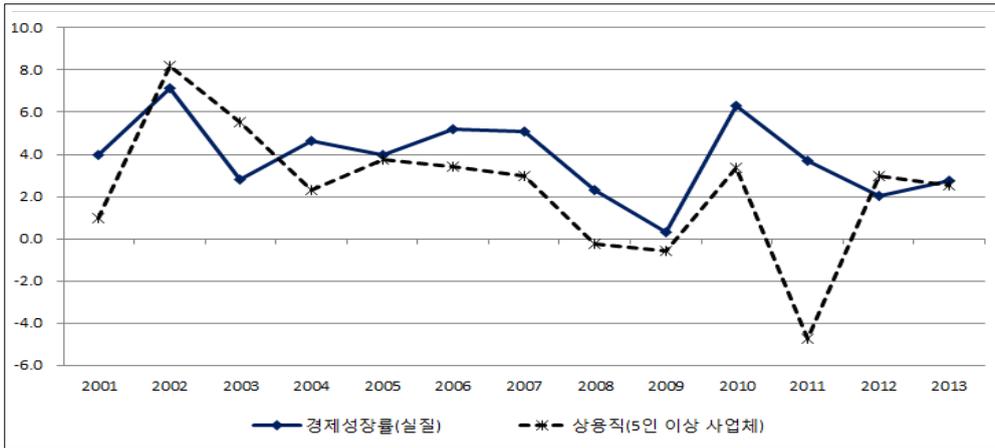
임금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두 조사를 통해 2013년 임금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에 나타난 2013년 월평균 임금총액은 2,181천 원으로 전년대비 3.7% 상승하였다. 또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2인 이상 전국 근로자가구의 2013년 월평균 근로소득은 3,957천 원으로 전년대비 3.1% 상승하였다. 『가계동향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는 2013년 임금상승률이 2012년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결정된 것과 대조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는 2013년 임금상승률이 2012년보다 0.2%p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한편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1.2%)을 감안한 전체근로자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사업체노동력조사』에서 2.6%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201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됨에 따라 실질임금 상승률은 2012년 대비 0.5%p 감소에 그쳤다.

대체로 실질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2013년 경제성장률은 2.8%(한국은행) 수준으로 2012년(2.0%)보다 높았음에도 성장률의 증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실질임금이 결정되었다(그림 2 참조). 이번 상용직 임금상승률 둔화의 주된 원인인 정액임금 상승률의 둔화가 주로 중소기업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보아 임금이 경기변화에 즉각적인 탄력반응을 하기보다는 후행적인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 실질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



주 : 1)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은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임금총액을 이용함.
 2) 2011년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실질임금상승률이 큰 폭으로 감소한 주요원인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감소영향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http://ecos.bok.or.kr/>

2. 2013년 임금교섭과 노사간 협약임금 인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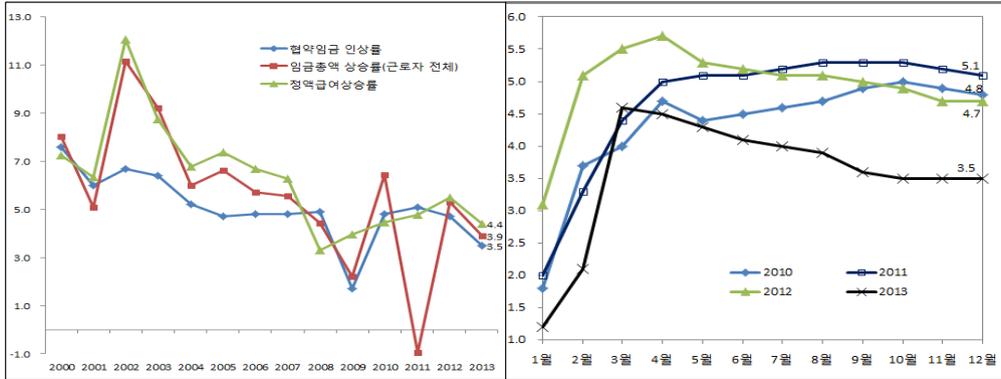
임금상승률은 경제 여건 및 노동시장을 둘러싼 여러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무엇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결정되므로 노사관계 요인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이루어진 임금교섭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협약임금 인상률’ 통계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 통계로 특별급여 등 변동성 급여가 제외되고, 정액급여 등의 고정성 급여만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체조사 결과 나타난 ‘임금총액 상승률’보다 연도 간 변동이 크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때문에 정액급여의 변동과 매우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 특징을 보인다.

[그림 3]의 왼쪽 그림을 먼저 보면, 2013년 협약임금 인상률(총액기준)은 3.5%로 2012년의 4.7%보다 1.2%p 감소하였고, 2011년 이후 2년 연속 감소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2013년 정액급여 상승률 둔화의 주된 요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그림 3]의 오른쪽 그림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인데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과거에는 대체로 협약임금인상률이 3~5월 타결된 이후부터는 교섭타결 시점과 임금인상률 간의 격차가 그리 크지 않고 대체로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은 5월 교섭타결 이후 지속적으로 협약임금인상률이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13년의 감소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림 3] 연간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좌)와 월별 협약임금인상률(우)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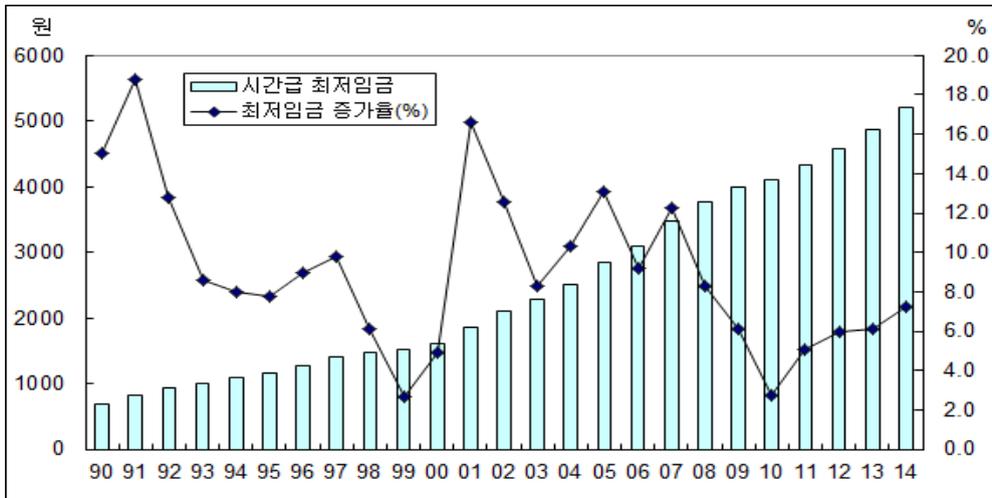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임금총액 상승률과 정액급여 상승률은 5인 이상 상용직 기준임.
 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한편 최저임금 인상률도 임금상승률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살펴 보도록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시급 5,210원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2013년 대비 7.2% 인상에 해당한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이어가다 2010년 2.8%로 최저수준을 기록한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원, %)



자료: e-나라지표, www.index.go.kr

II. 2013년 부문별 임금동향

1. 300인 이상 사업체, 정규직 중심으로 임금상승률 증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사업체 규모별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을 보면 모든 규모에서 임금상승률이 플러스 증가를 했지만,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를 제외한 모든 규모에서 2012년 임금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기록하였다 (표 2 참조).

300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은 3.6%로 2012년에 비해 0.1%p 증가한 데 비해 나머지 사업체의 임금상승률은 대부분 상승률이 둔화되었다. 특히 100~299인 사업체는 2012년 대비 3.8%p 감소한 3.9%의 임금상승률을 보여 둔화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30~99인 사업체는 3.2%p 감소한 3.2%의 임금상승률을, 10~29인 사업체는 2%p 감소한 3.8%의 임금상승률을, 5~9인 사업체는 0.9%p 감소한 4.1%의 임금상승률을 기록했다.

〈표 2〉 기업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수준 및 상승률 동향

(단위: 천 원/월, %)

	상용근로자 전체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2005	2,404 (6.6)	1,783 (8.6)	2,081 (7.0)	2,259 (6.3)	2,517 (5.4)	3,357 (6.1)
2006	2,542 (5.7)	1,886 (5.8)	2,187 (5.1)	2,413 (6.8)	2,646 (5.1)	3,493 (4.1)
2007	2,683 (5.6)	1,957 (3.7)	2,331 (6.6)	2,574 (6.7)	2,836 (7.2)	3,744 (7.2)
2008	2,802 (4.4)	2,055 (5.0)	2,385 (2.3)	2,593 (0.7)	2,928 (3.2)	3,921 (4.7)
2009	2,863 (2.2)	2,115 (2.9)	2,442 (2.4)	2,682 (3.4)	2,957 (1.0)	3,934 (0.3)
2010	3,047 (6.4)	2,212 (4.6)	2,561 (4.9)	2,837 (5.8)	3,126 (5.7)	4,291 (9.1)
2011	3,019 (-0.9)	2,186 (-1.2)	2,562 (0.0)	2,864 (0.9)	3,113 (-0.4)	4,273 (-0.4)
2012	3,178 (5.3)	2,295 (5.0)	2,711 (5.8)	3,046 (6.4)	3,355 (7.7)	4,424 (3.5)
2013	3,299 (3.8)	2,389 (4.1)	2,815 (3.8)	3,145 (3.2)	3,484 (3.9)	4,58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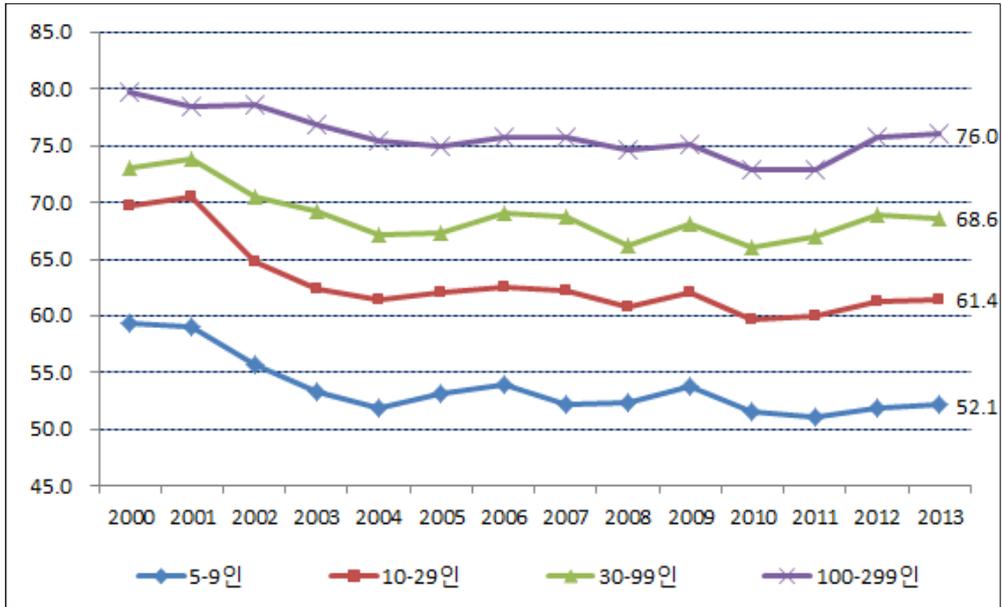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기준임.

2)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그림 5]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 추이

(단위: %, 300인 이상=100.0)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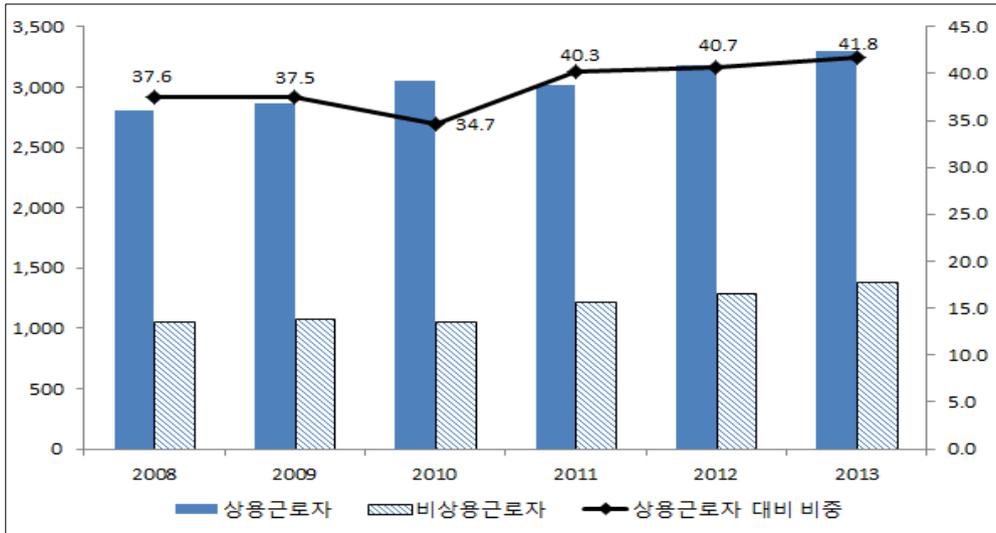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상용근로자의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는 300인 이상 사업체를 기준으로 30~99인을 제외한 모든 규모의 사업체에서 2012년 대비 소폭 축소되었다. 5~9인 사업체는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평균임금 대비 52.1%로 2012년 대비 0.2%p 격차가 축소했고, 10~29인은 61.4%로 0.1%p 격차축소, 100~299인 사업체는 76.0%로 0.2%p 격차가 축소했다. 반면 30~99인 사업체의 임금격차는 68.6%로 2012년에 비해 0.3%p 격차가 확대되었다. 전체적으로 금융위기 직후 확대되었던 기업규모 간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통해 상용직근로자와 비상용직근로자의 상대임금추이를 보면, 2010년 이후 임금격차가 다소 완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그림 6 참조). 최근 상용직 중심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2013년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이 2012년에 비해 다소 둔화된 영향으로 비상용근로자의 상대임금격차는 2012년에 비해 1.1%p 줄어들어 41.8%를 기록했다.

그러나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를 이용하여 종사상 지위별 및 고용형태별로 임금추이를 살펴보면 「사업체노동력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3 참조).

[그림 6] 상용근로자와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 및 비상용근로자의 상대임금 추이

(단위: 천 원, %)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2013년 상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2,695천 원으로 2012년 대비 2.7% 상승하였으며, 임시직의 월평균 임금은 1,297천 원으로 2012년 대비 0.6% 증가, 일용직의 월평균 임금은 1,022천 원으로 2012년 대비 4.4% 증가하여, 모든 종사상 지위에서 임금상승률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임시직의 임금상승률은 2012년에 미치지 못한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2013년 상용직 임금을 기준으로 임시직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상용직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2012년에 비해 1.0%p 감소한 48.1%를 기록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임시직의 임금격차는 2000년 이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반면 일용직의 임금격차는 일용직 임금상승의 영향으로 2012년에 비해 0.6%p 증가한 37.9%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2000년대 초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고용형태로 구분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비교하면, 2013년 정규직의 임금상승률(3.5%)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비정규직 임금상승률(2.5%)이 결정되면서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2012년 56.6에서 2013년 56.1로 감소해 격차가 더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참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상대임금은 금융위기 이전에는 60% 초반 수준이었으나 2009년 이후에는 50% 중반 수준에 불과하며 이러한 현상이 개선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 [그림 7]을 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일용직과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비상용근로자 상대임금 수준은 2008년 국제금융위기 이후 오르기 시작해 격차가 축

〈표 3〉 종사상 지위별 임금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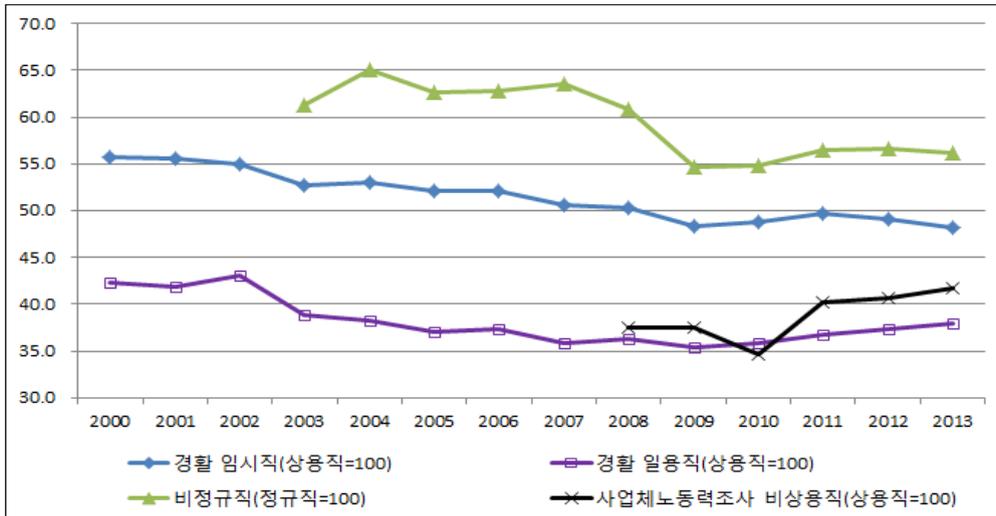
(단위: 천 원/월, %)

	종사상지위별					고용형태별		
	상용직	임시직	상대수준 (상용직=100)	일용직	상대수준 (상용직=100)	정규직	비정규직	상대수준 (정규직=100)
2000	1,527(-)	852(-)	55.8	646(-)	42.3			
2001	1,649(8.0)	916(7.5)	55.6	689(6.7)	41.8			
2002	1,769(7.3)	971(5.9)	54.9	760(10.3)	43.0			
2003	1,958(10.7)	1,032(6.4)	52.7	759(-0.2)	38.8	1,678(15.3)	1,028(5.3)	61.3
2004	2,036(4.0)	1,080(4.6)	53.0	779(2.6)	38.2	1,771(5.6)	1,152(12.0)	65.0
2005	2,117(3.9)	1,102(2.0)	52.1	783(0.6)	37.0	1,846(4.2)	1,156(0.4)	62.7
2006	2,184(3.2)	1,139(3.4)	52.2	814(4.0)	37.3	1,908(3.4)	1,198(3.6)	62.8
2007	2,299(5.3)	1,163(2.1)	50.6	823(1.1)	35.8	2,008(5.3)	1,276(6.5)	63.5
2008	2,409(4.8)	1,212(4.2)	50.3	875(6.3)	36.3	2,127(5.9)	1,296(1.6)	60.9
2009	2,419(0.4)	1,170(-3.5)	48.4	858(-2.0)	35.5	2,201(3.5)	1,202(-7.3)	54.6
2010	2,500(3.4)	1,221(4.4)	48.8	898(4.7)	35.9	2,294(4.2)	1,258(4.7)	54.8
2011	2,567(2.7)	1,275(4.5)	49.7	945(5.3)	36.8	2,388(4.1)	1,348(7.1)	56.4
2012	2,623(2.2)	1,289(1.1)	49.1	979(3.6)	37.3	2,460(3.0)	1,393(3.3)	56.6
2013	2,695(2.7)	1,297(0.6)	48.1	1,022(4.4)	37.9	2,546(3.5)	1,428(2.5)	56.1

주: ()안의 수치는 전년대비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그림 7〉 고용형태별 상대임금 추이

(단위: %)



주: 사업체노동력조사의 비상용직의 상대임금은 상용직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8월)』 원자료,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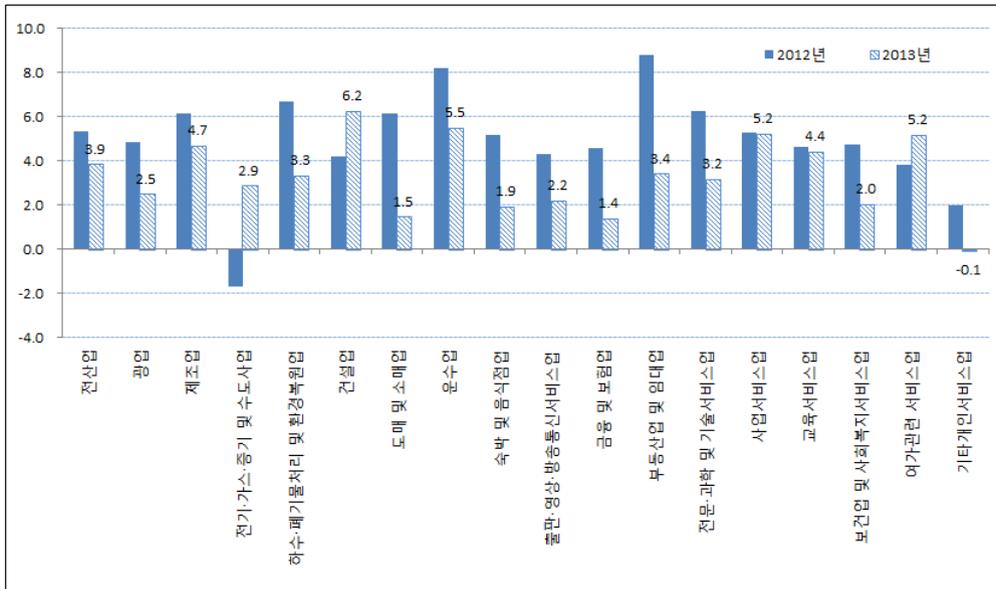
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임시직과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답보상태이거나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조사별로 상이함을 보이고 있다. 특히 비정규직의 상대임금 수준은 2009년 이후 크게 하락한 이후 장기간 정체되고 있어 임금격차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2.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률 둔화

산업별 임금상승률을 보면, 2013년 현재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하였다(그림 8 참조). 그러나 건설업(6.2%), 여가관련 서비스업(5.2%),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2.9%)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2012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임금상승률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8) 산업별 임금상승률 격차

(단위: %, 300인 이상=100.0)



주: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http://laborstat.moel.go.kr/>

Ⅲ. 2014년 임금상승률 전망

1.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하면 2014년 임금인상률은 4.4%로 계산

국민경제 전체로 볼 때 임금(엄밀하게는 경제 전체의 근로소득) 상승률을 국민경제생산성 상승률로 측정되는 노동생산성 상승률과 일치시키면 임금인상에 의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cost push inflation)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기여분만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득분배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성 증가에 조응하는 임금상승률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우선 완전경쟁시장 및 1차 동차 생산함수($y = AL^\alpha K^\beta$, $\alpha + \beta = 1$)를 가정하고 이윤극대화 조건을 정리하면 식 (1)이 도출된다.

$$\frac{W}{P} \equiv w = MP_L \equiv \alpha \frac{y}{L} \dots\dots\dots (1)$$

여기서 W 는 명목임금, P 는 물가(소비자물가지수)를 나타내며 w 는 실질임금을 의미한다.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실질임금은 노동의 기여분, 즉 노동의 한계생산성만큼 주어지기 때문에 $w = MP_L$ 의 등식이 성립하며, 노동의 한계생산성은 산출량(실질GDP) y , 노동투입량(근로자 수) L , 그리고 노동소득분배율 α 에 의해 정의된다.

식 (1)에 자연대수(log)를 취하고 시간에 대하여 미분하면(노동소득분배율 α 는 일정하다고 가정), 식 (2)와 같은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이 도출된다.

$$\dot{W} = \dot{y} + \dot{P} - \dot{L} \dots\dots\dots (2)$$

이론임금인상률 =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취업자증가율

위의 관계를 국민경제 전체에 적용하기 위해 2014년 경제 및 노동시장 전망치를 식 (2)에 대입하면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한 이론임금인상률을 도출할 수 있다. 생산성임금제에 근거하여 2014년 임금인상률을 계산하여 보면, 경제성장률 전망치(한국은행, 3.8%) 및 물가상승률 전망치(한국은행, 2.3%), 그리고 취업자증가율 전망치(한국노동연구원, 1.7%)가 예상대로 실현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적으로는 약 4.4%의 임금상승률이 계산된다.

그러나 국민경제생산성에 근거한 임금인상률은 실제 임금상승률과 어느 정도 괴리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이론임금인상률은 생산성 이외에 노동시장의 여건, 노사관계, 사회적 분위기 등 임금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반영되지 않은 평균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임금인상률을 조건이 다른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2013년 한국노총 요구율 전년과 동일

한국노총은 2014년 정규직의 임금인상 요구율을 생계비 및 근로자 간 격차해소 등을 감안하여 8.1%로 요구하였고, 비정규직은 17.8%의 임금인상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의

〈표 4〉 경영계의 제시율과 노동계의 요구율 및 명목임금 상승률 추이

(단위 : %)

	경영계(경총)	노동계		명목임금 상승률
		민주노총	한국노총	
1997	0.0	10.6	11.2	-
1998	-25.0	7.2	4.7	-
1999	0.0	7.7	5.5	-
2000	5.4	15.2	13.2	8.0
2001	3.5	12.7	12.0	5.1
2002	4.1	12.5	12.3	11.2
2003	4.3	11.1	11.4	9.2
2004	3.8	10.5	10.7	6.0
2005	3.9	9.3	9.4	6.6
2006	2.6	9.1	9.6	5.7
2007	2.4	9.0	9.3	5.6
2008	2.6	8.0	9.1	4.4
2009	-	-	-	2.2
2010	0.0	9.2	9.5	6.4
2011	3.5	-	9.4	-0.9
2012	2.9	9.3	9.1	5.3
2013	-	8.9*	8.1	3.8
2014	2.3	-	8.1	-

- 주 : 1) 1999년 경총은 구조조정이 완료된 기업은 동결, 진행 중인 기업은 임금삭감을 제시함.
- 2) 2004년 경총은 3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300인 미만 기업은 3.8% 인상을 제시함.
- 3) 2005년 경총은 1,000인 이상 기업은 동결, 1,000인 미만 기업은 3.9% 인상을 제시함.
- 4) 2006년 경총은 수익성 저하 기업과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6% 인상을 제시함.
- 5) 2007년 경총은 대졸 초임 및 고임 대기업은 동결, 그렇지 않은 기업은 2.4% 인상을 제시함.
- 6) 2009년도는 '2·23 노사민정 합의'에 따라 노사가 요구율 및 제시율을 발표하지 않음.
- 7) 2005년도부터 노동계 요구율은 정규직 요구율을 기준으로 함.
- 8) 2011년 민주노총은 전체 정규직 요구율을 발표하지 않고 산별조직이 독자적으로 정하게 함.
- 9) * 2012년 이후 민주노총은 정규직의 월 정액임금에 대한 상승률 요구율임.
- 10) 2013년 민주노총은 '동일정액 인상안'을 제시함.
- 11) 명목임금 상승률은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상용근로자 대상임.

자료 : 한국경총·민주노총·한국노총 및 고용노동부 발표자료, 각 연도.

2014년 임금인상 요구안은 2013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빈곤문제 해소와 양극화 및 차별 완화를 위해 2014년 최저임금 요구액을 시급 6,139원(17.9% 인상)으로 제시하였다.

반면 경영계(경총)는 노동현안을 둘러싼 노사관계 악화를 예상하며 2014년 임금상승률을 2.3%로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2016년 대기업부터 도입 예정인 60세 정년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하였다.

민주노총은 2014년 임금인상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3. 2014년 임금상승률은 5.2%로 전망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4년 세계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중심의 회복세가 이어져 3.6% (2013년 10월 전망치와 동일)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는 물가안정, 고용상황 회복 등으로 소득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2014년 연간 경제성장률을 2013년 10월의 전망치과 동일한 3.8% 수준일 것으로 전망하였다(한국은행 2014. 1. 『경제전망보고서』).

2013년의 임금상승률(『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근로자 기준)은 3.9%로, 경제성장률이 2013년 2.8%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5.3%)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는 고용을 주도하였던 상용직의 정액급여와 특별급여 상승률이 둔화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경제 및 고용상황 회복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에는 경기회복으로 인한 임금상승 압력이 기본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소비자물가상승

〈표 5〉 2014년 경제전망

(단위 : %)

		2013			2014p		
		상반	하반p	연간p	상반	하반	연간
한국은행 (2014. 1)	GDP	1.9	3.7	2.8(2.8)	3.9	3.7	3.8(3.8)
	민간소비	1.6	2.1	1.9(1.9)	3.4	3.4	3.4(3.3)
	설비투자	-8.2	6.7	-1.1(-1.2)	8.0	3.7	5.8(5.7)
	건설투자	5.2	8.0	6.7(6.1)	3.5	0.0	1.6(1.7)
	상품수출	5.3	4.2	4.7(5.5)	4.7	9.7	7.2(7.2)
	상품수입	3.3	3.7	3.5(3.8)	4.4	9.5	7.0(6.9)
	소비자물가	1.4	1.2	1.3(1.2)	1.7	2.8	2.3(2.5)
한국노동연구원 (2013. 12)	취업자증가율	1.5			1.7		
	실업률	3.1			2.9		

주 : 1) ()안은 2013년 10월 전망치.

2) p는 전망치임.

자료 :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한국노동연구원, 『월간 노동리뷰』 2013년 12월호.

률이 2013년(1.3%)에 비해 2.3%로 높아질 전망이다, 2013년에 비해 높아진 최저임금 인상률(7.2%) 역시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다소 낮아진 것은 하락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2014년 임금상승률은 5.2% 수준으로 전망된다. **KLI**